

공공재정환수법

허위청구

(적발시 5배 환수)

과다청구

(적발시 3배 환수)

목적외 사용

(적발시 2배 환수)



국민권익위원회

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

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
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**부정이익을 환수**,
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,
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


부정이익의 **환수**



최대 5배의 **제재부가금** 부과



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**명단공표**



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**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**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,
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
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“안전하게”
신고자 보호



“세상을 바꾸는 용기”
신고자 보상·포상



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?

공공재정이란?

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*이 조성·취득하거나 관리·처분·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.

*공공기관
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·공립학교

공공재정지급금이란?

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법 **+ 시행령**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

공공재정지급금에



청년수당



유아학비



출산장려금



노인장기요양급여



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?

부정청구의 유형 [법 제2조제6호]

허위청구 [가목]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과다청구 [나목]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목적 외 사용 [다목]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
오지급 [라목]

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제재부가금 부과·명단공표 대상



부정청구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?



1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합니다

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.



+



2

제재부가금을 부과받습니다

*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

행정청은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합니다.



허위청구

부정이익 가액의

×5

과다청구

부정이익 가액의

×3

목적 외 사용

부정이익 가액의

×2

3

명단이 공표됩니다

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이 공표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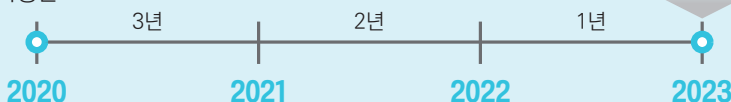
"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"란?

-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,
-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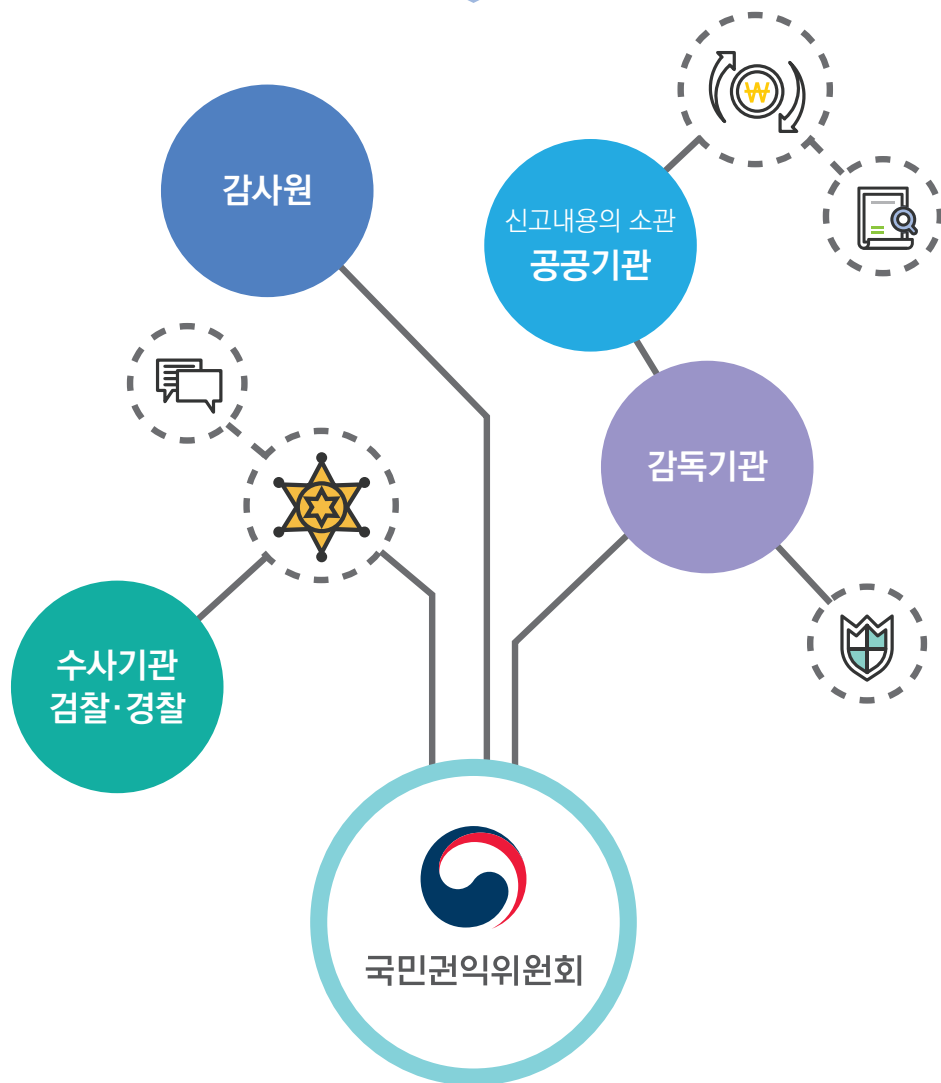
예시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

공공재정환수법
시행년도

공표하려는 해



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

어떻게 신고하나요?



소중한 나랏돈
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



신고상담

국번없이 **110**번 또는 **1398**번



신고방법

인 터 넷

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방문·우편

국민권익위원회

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)

정부합동민원센터

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)

F A X

044-200-7972



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네!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


신분보장 등

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,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때
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,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

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

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,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·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



신변보호조치

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

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신고자등의 보호

누구든지 다음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

-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
-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
-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·감사·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·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
- 신고한 사람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에 관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

※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

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.



보상금은

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포상금은

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공공재정환수법



국민권익위원회